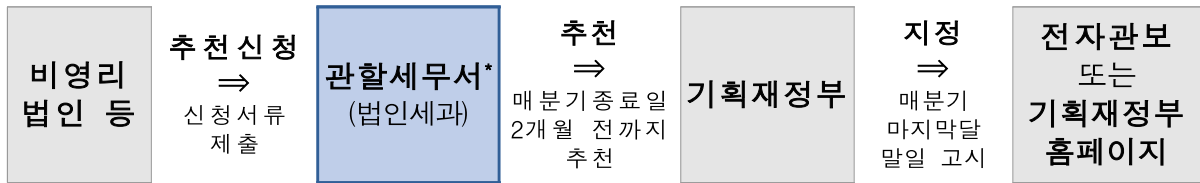


2021년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 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신규 지정(재지정) 신청시

1. 지정추천 절차



* 2021.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지정추천 업무 이관 (주무관청→국세청)

< 분기별 추천신청 접수기간 >

☞ 2021년에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은 2021.9.30.까지 신청해야 함

구 분	추천신청 접수기간	국세청 추천기한	기재부 지정일
1분기	전년도 10/1~12/31*	1/31	3/31
2분기	당해연도 1/1~3/31	4/30	6/30
3분기	당해연도 4/1~6/30	7/31	9/30
4분기	당해연도 7/1~9/30	10/31	12/31

* 1분기에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2021.1.15.까지 신청가능 함

2. 신청 대상법인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민법상 사단·재단법인·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외국법인·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1호 바목)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①

*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의 취지는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회원 및 소수의 특정인만을 위해 한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p>※ 1. 공익목적이 아닌 회원 또는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거나 친목도모 성격의 단체는 지정대상에서 배제됨</p> <p>2. 단체명에 생존하는 특정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 기부금단체 지정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p>
②	<p>○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p> <p>* [잘못된 사례] 유사한 다른 비영리단체, 유사한 다른 법인, 유사법인 또는 유사한 다른 단체 (∴ 가능한 정관에 상기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규정)</p> <p>**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 「협동조합 기본법」 제104조에 따라 해산시 잔여재산의 처리를 정관에 규정한 경우 인정</p>
③	<p>○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 카페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①포털사이트 검색이 가능하고, ②연중 자료열람에 제한이 없는 등 홈페이지의 기능을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p> <p>○ 법인의 공익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p> <p>※ 재지정신청의 경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였을 것</p> <p>* 홈페이지 주소를 추천 신청서에 기재하고, 반드시 불특정다수가 공익목적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금단체 명의의 독립된 한글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p> <p>**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해야 함</p>
④	<p>○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p> <p>*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p>
⑤	<p>○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턴 3년이 경과하였을 것</p> <p>* 지정취소(재지정제한)의 사유가 지정요건(①~③) 미충족 사유에만 한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p>

※ 신청 대상 유의사항

- 그동안 법령 등에 의해 기부금단체로 인정되었던 아래의 단체는 기부금단체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21년부터 지정추천 절차에 의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함 (「법인세법 시행령」 2018.2.13. 개정사항)

1. 2018. 2. 13. 전에 인·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단체
2. 2018. 1. 1. 전에 (구)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7로 지정됐던 단체 중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단체
3. 2018. 2. 13. 전에 (구)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2로 지정됐던 기부금단체

3. 신청시 구비서류

- ① 지정기부금단체 등 추천 신청서(별지 제63호의5 서식)
- ② 법인의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구 분	제출서류
민법상 사단·재단 법인,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법인설립허가서* 및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및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비영리외국법인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법인의 설립에 관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문서류는 한글 번역서류도 포함하여 제출)

* 법률에 따라 등록된 기관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는 말소사항을 포함하며 제출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경우로 한정

- ③ 정관
- ④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2021년) 예산서*
 - * 제출일 현재 법인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i) 제출가능한 사업 연도의 결산서, (ii)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iii)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를 제출
 - ** 1분기 신청시에는 2017년~2019년 결산서 및 2021년 예산서로 제출 가능
- ⑤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3년(2021년~2023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재지정 신청의 경우 5년(2021년~2025년)
- ⑥ 법인 대표자의 지정기부금단체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별지 제63호의6 서식)
- ⑦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설립 후 1년 미만 법인은 제출 제외 가능)
- ※ ⑥, ⑦의 서류는 신규지정 신청시에만 제출대상임

4. 신청방법

- ①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 접수
 - *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
- ② (우편/방문) 주사무소 및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구비서류 접수
 - * 관할세무서 찾기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청 소개 > 전국 세무관서

5.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① 지정기간

- (신규)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21.1.1.~'23.12.31.)
- (재지정)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21.1.1.~'26.12.31.)

②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 (법인)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
- (개인)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단,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6. 법인세법상 의무사항

①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사항

- 지정기부금단체는 지정기간 동안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매 사업연도마다 **의무이행 여부**를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별지 제63호의10 서식)」에 의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무관청'**에 제출
- * **주무관청**은 기부금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점검결과**(제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 사실)를 **국세청에 통보**(구 법인령§39⑦)

☞ **아래의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미보고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가 됨**

① 지정요건 ①~③을 모두 충족할 것

- ①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
- ②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자체, 유사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
- ③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공익위반제보**가 가능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의 홈페이지 중 1개 이상이 해당법인의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을 것**

②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

③ 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단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④ 기부금단체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⑤ 각 사업연도의 **지출액**(수익사업 지출 제외)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내역**이 있을 것

⑥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⑦ **결산서류** 등을 단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시**할 것

⑧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것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해당 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공개)

*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종류별 서비스 > 공익법인 공시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②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

- ① 상증세법상 의무위반으로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 이상(가산세 포함) 추징된 경우
-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경우
 - 나. 위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다. 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주무관청의 보고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③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④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⑤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③ 재지정 배제사유

-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법인의 지정기간 중 “②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재지정 배제

④ 기부금영수증 관련 의무사항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 서식)으로 발급
 - * '21.1.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는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 가능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 서식,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7서식(1))
 -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 서식)
 -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7.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사항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다음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함

☞ 아래의 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지정취소 되거나, 증여세 또는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① 국세청에 제출·신고해야 하는 서류

구 분	내 용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 신고	• 대상	모든 공익법인 (종교법인 제외)
	• 신고기한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 대상	출연재산이 있는 모든 공익법인
	•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턴 3개월 이내
결산서류 공시	• 대상	모든 공익법인 (종교법인 제외)
	• 공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턴 4개월 이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 대상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턴 3개월 이내
외부 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 대상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학교법인 등 제외)
	•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턴 3개월 이내

② 공익법인 운영시 지켜야 하는 의무

구 분	내 용	
장부의 작성·비치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용 등에 대한 장부 작성 (10년간 보존)	
전용계좌 사용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거래에 대해서 전용계좌 사용	
출연재산 등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	출연재산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출연재산 매각대금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운용소득	1년 내 70% 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성실공익법인 80%)
주식 취득·보유	주식을 출연 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 주식의 일정 비율 초과 보유 금지 * 일반공익법인 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없는 성실공익법인 10%(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 성실공익법인 20%)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가액이 총자산가액의 30% (외부감사 등 예외적인 경우 50%) 초과보유 금지
출연재산 의무사용	출연재산가액의 1%(3%)이상 직접 공익목적 사용 (종교법인 또는 총자산가액 5억원 미만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제외)	
이사구성 등 제한	출연자 등이 이사의 1/5 초과 금지 또는 임직원 취임 금지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외부 회계감사의무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대상 공익법인 (의료법상 의료법인,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등 제외)	
기 타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 금지, 자기내부거래 금지,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 혜택 제공 금지 등	

법인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이미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법인 등이 당해 법인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와 함께 관할세무서(또는 홈택스)로 지정기부금단체 명칭변경 신청(추천신청 접수기간과 동일)
 - 구비서류 : ① 기부금단체 명칭변경 신청서(별지 제63호의5 서식) → '21.3월 개정예정서식
 - ②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③ 정관(구 정관, 신 정관, 신규 대비표 첨부)
- 해당 법인이 명칭변경 후에도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기획재정부로 명칭변경 의뢰하고 기획재정부에서 매분기 종료일까지 그 사실을 관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

개정사항 안내

(2020.2월 법인령 개정)

- 지정 관련(2021.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신청) 비영리법인 등 → 주무관청 ○ (지정추천) 주무관청→기획재정부 ○ (지정기간) → 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신청) 비영리법인 등 → 국세청(소재지 관할세무서) ○ (지정추천) 국세청→기획재정부 ○ (지정기간) 이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지정 : 3년 - 재지정 : 6년* * 신규지정 후 사후관리 결과 공익성이 부합되는 단체만 재지정

- 의무이행 관련(20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절차 기부금단체(의무이행여부 보고) → 주무관청(점검 및 결과 통보) → 국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 절차 변경 기부금단체(의무이행여부 보고) → 국세청(소재지 관할세무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홈택스 접근경로)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법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가능

* 홈택스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

신청/제출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민원사무를 인터넷으로 신청 또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존 홈택스 서비스를 포함하여 현금영수증전용카드, 근로장려금, 연말정산소득공제자료의 신청 또는 제출 서비스가 함께 제공됩니다.

- 신청 업무는 승인, 허가, 신고 등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이용, 첨부서류가 있는 민원의 경우 pdf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신청 후 나의 민원신청내역에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신청/제출 이용시간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연중무휴 06:00 ~ 24:00
- 휴·폐업 및 재계업신고 연중무휴 09:00 ~ 23:00
- 소비제세 및 거주자 증명, 국제세원, 일반세무서류 업무 24시간

신청/제출 이용절차

- 01 홈택스 로그인
- 02 신청/제출 대상선택 신청/제출 진행
- 03 신청/제출 결과확인

과세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 세금계산서합계표
- 계산서합계표
- 과세자료 삭제요청
- 신종금융상품 중 조세특례적용
- 연금수령개시및해지명세서
-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제출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결과 통보서 제출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
- 파생상품거래내역서
- 보험금 자료제출
- 예약증권 관련 예약자별 이자,배당소득 지급 실적
- 고배당기업 배당명세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근로·사업등)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소비제세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일반세무서류 신청

현금영수증전용카드 신청/등록

전산매체제출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

주요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

- 사업용(공익법인용)계좌 개설관리
- 송달장소(변경) 신고
-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서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포기신청
- 징수유예신청
-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
- 비거주자의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 사실 증명
- 주사업장출납부 승인신청
- 주사업장출납부 변경신청
- 거주자증명서 발급신청서
- 납부기한연장 승인신청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납세자보호민원

- 권리보호요청
- 권리보호요청 보정
- 고충민원신청
- 금융중빙등조화신청
- 고충민원취하신청
- 고충민원심리자료사전열람
- 고충민원보정
- 모법납세자추천

신청업무

-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
- 불복(과징/미의/심사등)신청
- 외부위원지원서제출
- 민원서류발급 제한(해지신고)
- 전자(세금)계산서자료신청
- 모법납세자 추천(신청)
- 사실증명신청
- 민원증명 발급예약(방문수령)
-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 기부금단체 점검결과 보고서
- 예술품등 매각대행의뢰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

공익법인 공시 시스템 (홈택스 접근경로)

■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종류별 서비스 > 공익법인 공시

My홈택스 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인증센터 법령정보 부서사용자 가입하기 화면크기 100%

HomeTax.국세청홈택스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세무대리/납세관리 검색 전체메뉴

주택관련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주택세금 100문 100답 바로가기

세무 캘린더 2020년 10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7	28	29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4	5	6	7

자주찾는 메뉴 + 등록 1/3

- My 홈택스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세 신고도움 서비스
- 나의신고대리인 수임동의
-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 탈세제보
-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조회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
- 원전세신고

세금종류별 서비스 2/2

- 모의계산
- 연말정산간소화
- 법인세
- 공익법인공시**
- 근로지

My홈택스 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인증센터 법령정보 부서사용자 가입하기 화면크기 100%

HomeTax.국세청홈택스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세무대리/납세관리 검색 전체메뉴

공익법인공시

공익법인 결산서류 / 법정·지정기부금 단체 기부금 내역
공시 및 공개시스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시/공개 열람하기

- 공익법인 결산서류등 공시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기획재정부장관 지정)

공시/공개 등록하기

- 공익법인 결산서류등 공시**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공지사항 더보기

- 공익법인 공시 열람하기 기능 점검 (완료)
- 공익법인 신고서 작성요령 동영상 안내
- 공익법인 전문상담팀 안내 (2020년 2월 18일 기준)

공익법인 전자공시 제도 안내

법정·지정기부금 단체 기부금 공개제도 안내

기부장려금 제도 안내

ALIO

지정결과 조회 [기재부 홈페이지, 홈택스]

■ 기획재정부(www.moef.go.kr) > 법령 > 고시 > 지정기부금단체등 지정·변경 고시

기획재정부 정보공개 뉴스 정책 통계 **법령** 국민참여 기관소개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

고시·공고·지침 홈 / 법령 / 고시·공고·지침

고시는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널리 국민에게 알리는 문서를 말한다.

좀 더 빠른 검색을 원하시면 **기간선택 및 검색어**를 이용하시면 더 빠른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고시** ● 공고 ● 지침

검색기간 날짜 미지정 ~ 1주일 1개월 3개월

검색구분

협동조합연합회 등 명칭사용 기준 고시
2020.10.07. | 협동조합과 고시 번호 : 기획재정부 고시 2020-29

2020년 3/4분기 지정기부금단체등 지정·변경 고시
2020.09.29. | 법인세제과 고시 번호 : 기획재정부 고시 2020-27

■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종류별 서비스 > 공익법인 공시 >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My홈택스 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인증센터 법령정보 부서사용자 가입하기 화면크기 100%

HomeTax 국세청홈택스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세무대리/납세관리 검색 전체메뉴

≡ 공익법인공시

공익법인 결산서류 / 법정·지정기부금 단체 기부금 내역

공시 및 공개시스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시/공개 열람하기

- 공익법인 결산서류등 공시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기획재정부장관 지정)**

공시/공개 등록하기

- 공익법인 결산서류등 공시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바로가기

- 자주 찾는 메뉴
- 세금종류별 서비스
- My홈택스
- 홈택스안내
- 접기 >

공지사항 **더보기**

- 공익법인 공시 열람하기 기능 점검 (완료)
- 공익법인 신고서 작성요령 동영상 안내
- 공익법인 전문상담팀 안내 (2020년 2월 18일 기준)

공익법인 전자공시 제도 안내

법정·지정기부금 단체 기부금 공개제도 안내

기부장려금 제도 안내

ALIO

사 업 계 획 서(자율양식)

※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되 목차 및 양식을 자유롭게 재구성·활용할 수 있습니다.

I. 주요사업 목표

- 1.
- 2.
- 3.

II. 세부사업 내용

1. (제1사업명)

가. 목 적 :

나. 사업내용 :

(1) 사업기간 :

(2) 장 소 :

(3) 수혜대상 :

다. 기부금 모금 목표액 :

라. 기부금 관리방법 :

마. 세부추진계획 :

바. 소요예산 : 금○○○원

(1) 인건비 :

(2) 운영비 :

(3) 기 타 :

2. (제2사업명)

3. (제3사업명)

지정기부금단체장(이사장)

(서명 또는 인)

공익활동보고서(자율양식)

※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되 목차 및 양식을 자유롭게 재구성·활용할 수 있습니다.

I. 주요 공익활동 실적

- 1.
- 2.
- 3.

II. 공익활동 실적

1. (제1공익활동)

가. 목 표 :

나. 활동내용 :

- (1) 활동기간 :
- (2) 장 소 :
- (3) 수혜대상 :

다. 기부금 지출액 : 금○○○원

- (1) 인건비 :
- (2) 운영비 :
- (3) 기 타 :

라. 당초 사업계획 달성 여/부 :

마. 기타사항 :

2. (제2공익활동)

3. (제3공익활동)

※ 첨부 : 공익활동 행사사진, 홍보책자, 기타 유인물 등 다양한 자료 첨부

지정기부금단체장(이사장)

(서명 또는 인)